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2년 4월 12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4.12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4. 11.(월)	담당부서	통상국내정책과
담당과장	홍순파 과장(044-203-3980)	담 당 자	진승덕 사무관(044-203-4119)

「무역조정지원제도」, FTA 뿐 아니라 공급망 등 통상 피해 지원으로 확대·개편

- 공급망 붕괴 등으로 통상피해를 입은 기업·근로자 지원 시행 -

- 「무역조정법 시행령」, 「통상조약국내대책위 규정」 4.12(화) 국무회의 의결 -

□ **무역조정지원제도**를 통해 FTA 뿐 아니라 **통상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**를 지원하는 내용의 **「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**(이하 "무역조정법")이 오는 **4월 20일(수)부터 시행**된다.

○ 동법 시행으로 그간 자유무역협정(FTA) 피해에 한정해서 지원해 온 **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범위**가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맞춰 **공급망 붕괴, 무역제한 조치, 인적·물적 이동 제한** 등 **통상피해로 폭넓게 확대**된다.

< 법률상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 범위 >

[기 존]		[기 존]		[확 대]
FTA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	⇒	**FTA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**	+	- ①**세계적 경제·금융위기**, ②**세계적 또는 국지적 공급망 붕괴**, ③**상대국의 무역제한 등의 조치** 등으로 인한 무역의 현격한 감소 - ④국가간 분쟁, 국경봉쇄 등으로 **인적·물적 자원의 이동 제한** - ⑤그 밖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무역·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
(상시)		(상시)		(통상피해 발생시)

○ 이를 통해, 최근 **러-우크라이나 사태** 등 **공급망 위기**로 인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**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***의 심의를 거쳐 피해기업의 지원방안과 대상을 확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.

* 구성 : 공동위원장 2명(산업부장관, 민간위원장(조석)), 기재·복지·식약처 등 18개 부처 차관급 및 상의·중기회장, 학계 전문가, 노동·농민단체장 등 민간위원 20명

□ 이에, 정부는 4.20일(수) 법률개정안 시행에 맞춰 세부 절차를 담은 **「무역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」** 및 **「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」**을 **4.12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**하였다.

○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, 이하 "산업부")는 **6개월 이상 기간** 동안 통상피해로 **생산 또는 매출이 5% 이상 감소***한 제조업 및 서비스 기업을 **'통상피해지원기업'으로 지정**하고,

* 피해기간(6개월)과 생산·매출 감소(△5%) 기준은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

○ 기존 무역조정지원의 **컨설팅·융자·근로자 지원**과 함께 추가적으로 관련부처의 정책지원을 연계하여 **중진공의 긴급 경영안정 지원, 코트라의 해외마케팅, 산업부·중기부의 사업재편·사업전환**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.

[現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]

컨설팅	경영 및 기술 컨설팅 (컨설팅 비용 80% 지원)
융자	시설 및 운전자금 (고정금리 연 2.0%)
근로자	고용유지 및 전직·재취업 지원

+

[관계부처 지원 연계 (예시)]

경영안정	긴급 금융·경영안정 지원
마케팅	수출마케팅, 국내외 전시회, 무역보험, 온라인 입점 등
원자재 수급	대체 수입처 발굴, 통관지원, 국내 생산기업 연계 등
생산성 제고	사업전환지원, 공장자동화, 기술컨설팅 등

□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"무역조정지원제도는 그간 우리나라가 **개방형 통상국가**를 지향해오면서 **취약한 분야, 피해기업을 지원**하며 **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버팀목**이 되어왔다"고 전제하고,

○ “금번 제도 확대를 통해 러-우크라이나 사태 등 **공급망 위기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지원**할 수 있는 **법적 근거가 마련**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”고 강조하며,

○ “향후 **포괄적·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**(CPTPP), 美 **인도 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**(IPEF)의 본격화시에도 우리 기업들의 피해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**무역조정지원제도를 계속 확대 발전시켜나갈 것**“이라고 밝혔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과 진승덕 사무관(☎ 044-203-411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**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한 기업 지원 사례**

◇ **유리섬유 보온재를 생산하는 A사**는 **한-미FTA 영향**으로 **미국 제품 수입이 증가**하고 **저가 수주 경쟁이 심화**되며 '17년 매출이 전년비 30% 이상 감소하였고, '18년 무역조정지원제도에 신청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다.

A사는 정책자금을 융자받아 **원부자재 구매 및 생산비 등에 활용**하여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였고, **경영컨설팅**을 지원받아 **생산성 향상, 원가절감, 직원 역량 강화** 등 경쟁력 개선을 추진하였다.

이후 정부의 R&D, 해외마케팅 등에 적극 참여하면서 **친환경 신제품 개발**에 성공하고 **대규모 신규 거래처를 확보**하였고, 매출액이 '19년 119억원에서 '20년 169억원으로 **40% 이상 성장**하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켰다.

◇ 가전·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**플라스틱·금속 부품을 생산하는 B사**는 **한-아세안, 한-중 FTA**로 인해 수입이 증가하면서 '19년 하반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20% 감소하였고, '20년 무역조정지원제도에 신청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다.

B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융자받은 정책자금을 **제품 품질관리 등에 활용**하였고, 수입 제품과의 **품질경쟁력 차이를 유지**하면서 **기존 거래처와의 신뢰**도 이어 나갈 수 있었다.

이를 바탕으로 B사는 매출액이 '19년 38억원에서 '20년 74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며 **도약의 발판을 마련**할 수 있었다.

◇ **낚싯대를 생산하는 C사**는 **한중 FTA**로 **저가형 낚싯대 수입이 증가**하면서 '18년 상반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22% 감소하였고, '19년 무역조정지원제도에 신청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다.

C사는 융자받은 정책자금을 활용해 낚싯대 제작에 필수적인 **카본원사 수입 애로를 원활히 해결**하였고, 어려움을 극복한 이후 자동화설비 도입 등 **생산성을 개선**하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.

C사는 '19년대비 '20년 **매출이 13% 증가**하고 **영업이익은 106% 증가**하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.